제95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(관세청)	1.유통이력신고물품 지정기간 연장(강화) ○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수입·양도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국내유통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-유통이력 대상물품(에이치 형강) 1개 재지정 (2024.9.9~2026.7.31) ▶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, 별표1	1.비중요
2	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특정국가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(강화) ○ 수출업자가 러시아-벨라루스 지역으로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(상황허가 대상품목)을 기존 1,159개에서 1,402개(+243)*로 확대 * 타이어, 금속절삭가공기계, 소방차, 공작기계부품, 센서 등 243개 ▶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(신설) ㅇ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대상, 신청 시 제출서류, 검사 처리기한 및 수수료 규정 – 수시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 시 제출하는 서류를 포함한 “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강도계산서”를 추가로 제출 – 수시검사는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사 시행 – 수시검사 대상 “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” 및 “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”에 대한 상세 대상을 규정 ▶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2.보수원 안전교육 등(신설) ㅇ 보수원 안전교육 주기·시간·내용 등 필요한 사항 규정 – (교육주기 / 교육시간) 1년 / 6시간으로 규정 – (교육시기)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도록 규정 – (교육내용) 기계식주차장 관련 일반지식 및 관련법령,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,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, 보수관련 필요지식 등으로 규정 – (교육 실시주체)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– (기타) 보수원 안전교육 수강료의 국토부장관 승인 및 교육내역 기록 관리 규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 규정 ▶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교육 등(신설) ㅇ 안전관리교육의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– 안전관리교육 주기/시간 : 3년/(신규)4시간,(보수)3시간 – 교육내용 등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 규정 – 교육기관의 안전관리교육 수수료 산정 기준 규정 ㅇ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, 점검자, 점검 결과 관리 등을 규정 ▶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	
4	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(강화) ㅇ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면제의 전제가 되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의 증빙 및 산정기간의 예외기준 강화 –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 추가 첨부(안 별표1 제2호 라목) –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(안 별표1 제2호 마목) –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온 경우 방문판매업 판매자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 삭제(안 별표1 제2호 마목) ▶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(신설) ㅇ 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8종 추가 * 혈액화학검사, 전해질검사, 초음파검사, CT, MRI, 심장사상충 예방, 외부기생충 예방, 광범위 구충제 ▶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제2조	1.비중요
6	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행정처분 위반 누적차수 적용기간 강화(강화) ㅇ 제대혈은행의 법정 허가요건 미충족 시 행정처분 누적 차수 적용기간 강화 (개정안 [별표 3] 제1호 다목) – 법정 시설·장비·인력·품질관리체계 요건 미충족 시([별표 3] 제2호 나목) 행정처분 누적 차수(1~3차)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▶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.부적격 제대혈 등의 미승인 공급 관련 행정처분기준 마련(신설) ㅇ 제대혈은행이 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부적격 제대혈·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(1차·2차·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·1개월·3개월) 설정 (개정안 [별표 3] 제2호 아목) ▶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(강화) ㅇ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로 인해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마약류 성분 ‘메틸페니데이트’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부기준*을 규정 * (주요내용) 효능군 · 성분별 특성에 따라 오남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처방 기간 · 용량 · 연령 등 명시 ▶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2조	1.비중요
8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한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의무(신설) ㅇ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(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)가 응급환자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해야 할 의무 부과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2.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강화(강화) ㅇ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를 현행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강화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강화(강화) ㅇ 권역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하나로, 시설기준 등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가 신속·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확보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과 ▶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	
9	생태·자연도 작성지침 개정안 (환경부)	1.생태자연도 이의신청시 등급평가 기준(신설) ㅇ 생태·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시, 해당지역에 ①산불발생, ②숲가꾸기, ③인위적 벌채 사실 발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산불발생, 숲가꾸기, 인위적 벌채 이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▶생태·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	1.비중요
10	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(신설) ㅇ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- (제3조제3호) 최고사용압력의 최소값 규정 - (제7조제10호) 압력스위치 성능 규정 - (제12조의2) 도막두께시험 도입 ▶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,제3조제7조	1.비중요